	가정통신문 세계와 소통하는 창의융합형 민주시민 육성	2021년 12월 02일 목요일	
		담 당 자	교사 이 0 0
		담당전화	070-7842-0998

전북 남원시 낙현길 17-14 / http://www.seojin.hs.kr / 063-631-1333(교무실) 063-631-1331(행정실)

2021학년도 2학기 1·2학년 2차고사 관련 안내 말씀

항상 본교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1학년도 2학기 1·2학년 2차고사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으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고 자녀에게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사기간 : 2021. 12. 06.(월) ~ 2021. 12. 09.(목)

□ 주의사항

1. 답안용 OMR 카드에 학년, 반, 번호, 이름, 과목코드를 바르게 기재 및 마킹합니다.
2. **답안용 OMR 카드의 모든 마킹은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하며, 수정액 및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답안용 OMR 카드, 서답형, 서술형의 기재는 검정색 펜으로 하며, 연필, 샤프펜, 적색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평가과목 응시 중에는 퇴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시험 종료 5분 전까지 답안지 교체를 허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고사 종료시간이 5분 이내로 남았을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답안지 교체를 허용하되 제출 답안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교체 이전 답안지를 제출한다. ② 교체 이후 답안지를 제출한다.)**
6. **고사기간 중에는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사기간 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자나 사용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당일 시험을 0점 처리하고 선도 조치합니다.**

□ 지필평가 시행 중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1.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기타증상(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의 마비)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발견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안내합니다.
2. 확진자 등으로 인해 학교가 지필고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할 경우 고사를 중지하고 추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고사 계획을 재수립합니다.
3. 결시자의 성적처리 방법

코로나19로 인해 평가에 결시한 학생에게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또는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ㅇ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또는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ㅇ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가족(동거인)이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ㅇ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100%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 1)격리 통지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2)수동감시 대상자인 학생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1)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2)코로나19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음성 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3)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4)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가족(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ㅇ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100%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소멸(호전)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ㅇ출석인정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ㅇ검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기준점수의 100%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 [감염예방 관리안내 5쪽]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검사(음성)결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결정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을 권장

※ 의심증상자의 경우 학생이 고사 응시를 희망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시험실을 운영할 수 있음 (대기실-전산실, 별도시험실-영어4실)

※ 최종 인정점 계산 방법

$$\text{최종 인정점} = \text{기준점수} \times \frac{\text{결시고사 평균}}{\text{기준고사 평균}} \times \text{인정점 부여비율}$$

(예시)

과 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 균	기준점수	평 균	
수 학	68.0	65	62.3	59.55

1) 68.0 : 65 = 62.3 : 기준점수
2) 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기준점수 × 1.0 = 59.55
4) 최종 인정점 = 59.55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ㅇ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ㅇ질병결석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ㅇ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ㅇ기타 결석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ㅇ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 고위험군 학생과 기타결석(감염우려)의 경우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또는 기타결석(감염우려)에 대한 학교장의 사전 승인 없이 미응시한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에 준하는 인정점을 부여함.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방안]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9.29.)≫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평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2021. 12. 02.

남 원 서 진 여 자 고 등 학 교 장